

신청서 / 접수증 (시험)

접수번호		접수일	
신청회사명		신청자	
성적서상호		연락처	
성적서주소			

의뢰대상

순번	품명	제조회사	모델명	기기번호	수량	비고

국가표준기본법 제 23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험을 의뢰합니다.

신청자

신청구분	정도검사 () 처리기간 : 30 일	접수방법	방문 ()	시료확인	입고 ()
	공인시험 () 처리기간 : 10 일		유선 ()		현장 ()
검토사항	시험방법	자체시험표준() 기타제시방법()			기술책임자
	시험위탁	미실시() 위탁기관()			
접수	상기 품목을 정히 접수합니다. 대윤계기산업(주) 담당자 _____				확인
참고사항					

<안내>

- 당사의 명백한 잘못과 시험결과와 취급·부주의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고객은 당사에 배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- 성적서 및 시험품을 인수하러 오시기 전에 먼저 완료여부를 확인(기술부 시험팀)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서류 및 기타 보완사항이 발생 시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- 성적서 시험결과와 측정불확도는 고객의 요청 시 표기됩니다. (참고사항에 기재)
- 신청 구분의 정도검사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제외 인정을 위한 시험으로, 「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·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」의 [별지 제3호 서식] 정도검사 점검표가 시험성적서에 기재됩니다.
- 정도검사의 수수료는 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1항에 따릅니다.

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, 207호(에이스테크노타워2차) Tel) 02-858-6870 Fax)02-866-9422